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17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1월 26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

나. 제안이유

-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삭제 조항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한 기한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삭제된 조항의 자리에 기존 조항을 순차적으로 이동(안 제3조~제2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조례안은

-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삭제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 검토 결과,

-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6가지 감면 항목을 일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감면 제도의 지속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 삭제된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앞당겨 재배치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감면 항목의 적정성 재검토에 활용하고, 감면 혜택이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